



產業保健醫와 保健管理者 (VI)

조규상

● 產業保健 管理體制 ●

Q.17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보건관리를 하여줄 수 있는 사업장은 어떠한 사업장입니까?

A. 산업장은 보건관리를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선임보건관리자를 두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 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보건전문 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아울러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건관리대행 제도가 1990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노동부 예규 제180호로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사업장 규모는 30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992년 9월 현재 전국 보건관리대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2. 9. 현재

대행 기관수	대행 사업장수	대행 근로자수
37	5,482	593,920

여기서 부언할 것은 산업보건은 사업장내에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으로 보건관리 대행기관은 보건관리를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보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주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칭도 산

업보건지원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관리대행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2. 12. 현재

보건관리대행기관	기 관 수
대학부속기관	12
대한산업보건협회	11
근로복지공사	5
종합병원, 의원	10
계	38

Q.18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자격(기구, 조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기준〉

- 1) 인력기준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대상사업장 150개 소 또는 대상 근로자 15,000인당)
 - ① 의료법에 의한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이상
 - ②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인 이상
 - ③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으로서 작업환경측정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 ④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이상인 자 1인이상 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 또는 농화학을 전공한 자 1인 이상
- 2) 시설기준
 - ① 건강상담실 : 17m²이상

- ② 작업환경측정 준비실 및 분석실험실 : 33㎡이상
- 3) 설비기준
 - (1) 작업환경측정기기 설비 15종
 - (2) 건강진단기기 및 설비 18종

Q.19 보건관리대행 사업 내용 및 업무수행 방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A. 보건관리대행 사업은 산업보건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활용하여 사업장 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사업내용의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내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관리대행 업무는 사업장내 전임 보건관리자와 같이 상주하여 보건관리 업무를 할수 없으므로 매월 일정한 방문회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현재 노동부 예규 제212호에 의하면 월1회 방문(1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월2회 방문(100인 이상 사업장 및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방문을 통해 다양한 내용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일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보건관리대행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산업보건 사업 내용중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건관리업무
 - a)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 c) 보건일지 및 보건 관련 서식 작성자 관리
 - d) 근로자 및 관리자 보건교육
 - e) 사업의 기획 및 조정 협의
- (2) 건강관리업무
 - a)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b) 근로자 건강장애(직업병)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c) 일차진료 및 응급처치
 - d) 근로자 건강상담
 - e)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 (3) 환경관리업무
 - a)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 의 설정
 - b)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 c)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 d) 작업환경측정 e) 일반위생시설관리
- (4) 작업관리업무
- a) 작업장 배치 및 시설물 관리 b) 작업 방법과 공정의 인간공학적 조사 c) 작업장 순회

Q.20 50인이하 사업장의 산업보건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50인 이하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조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실질적 보건관리를 위한 사업장내에서 보건관리를 전담하거나 보건관리대행등의 도움을 받는 선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50인이하 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보건관리를 할 만큼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세 사업장은 대기업의 하청 및 협력업체가 대부분이고 유해물질 취급이 많으며 직업병 또는 일반병의 유병율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단지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들 사업장은 산업보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던 관계로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업장 자체적인 보건관리를 위한 노력들이 전제되는 것이며 이러한 자체적인 노력은 사업주 뿐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이들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체계적인 국고지원체계를 마련하여, “93. 영세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